



「우리 더모아 사업자 통장」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상 품 명 : 「우리 더모아 사업자 통장」

· 상품특징 : 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전용 입출금통장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 상세조회에 따릅니다.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1인당 1계좌 이내 가입 가능)	
예금과목	• 기업자유예금	
거래방법	신규 : 영업점, 스마트뱅킹(WON기업) 해지 : 영업점	
판매한도	• 1만 좌 (판매 한도 소진 시, 별도 안내 없이 판매 자동 종료됨)	
이자 지급시기	• 예금의 이자결산은 매월 셋째주 금요일에 실시하며, 결산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영업일에 계산하여 그 다음 날(원가일)에 원금에 더함 ※ 예금의 이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를 원금에 더하 지 않고, 계좌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자 산출근거	•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약정한 금리를 적용하여 원가일(원가에 이자를 지급하는 날)에 이자 지급 ※ 예일 또는 지난 원가일로부터 원가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 계산 기간으로 함금	
상품전환	• 상품전환을 통한 예금 가입 <mark>불가</mark>	

				우리은행	
구 분	내 용 - 기본금리 : 연 0.1% (2025.05.27. 현재 / 세금납부 전 기준)				
적용금리 (최고금리 연 2.1%)	• 기본금리 : 연 0.1% (2025.05.27. 현재 / 세금납부 전 기준) • 우대금리 : 우대조건 충족 시 최대 연 2.0%p(세전) 제공 ※ 우대금리는 일별 잔액 1천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기본금리에 더하여 적용				
		일별 잔액	기본금리	우대금리	
	1,000만원 이하1,000만원 초과		· 연 0.1%	· 최대 연 2.0%p · 미적용	
	※ 기본금리 및 우대금리는 변동될 수 있으며, 금리 변동 시에는 변동일로부터 변 경된 금리를 적용				
	• 아래 우대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우대금리 최대 연 2.0%p 적용				
	우대고객	우대조?	4	우대금리	
	부수거래	· 매월 아래 부수거래 조건 ① 이 예금으로 가맹점 매출	대금 ^{주2)} 입금 시	 부수거래 1개 충족 연 1.0%p 부수거래 2개 충족	
	고객 ^{주1)}	② 우리은행을 통해 가입한 보유 시	노란우산 정상 계약 ^{무히}	: 연 1.5%p	
		③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자동		· 부수거래 3개 충족 : 연 2.0%p	
우대금리	신규/ 비대면 고객	 신규 시점 아래 조건 중 ① 입출금통장 미보유 고객^주 ② 스마트뱅킹(WON기업)을 	5)	· 연 0.5%p (가입일부터 1년간만 적용)	
	주1) 매월 전월말 기준 충족한 부수거래 조건 개수를 확인하여 전월 원가일부터 이번달 원가일 전일까지 우대적용 (단, 예금 가입 후 2개월간은 우대조건 충족 여부 관계없이 우대금리 기본 제공) 주2) 가맹점 매출대금 : 신용카드 매출대금, 제로페이 매출대금, 쿠팡 매출대금, 배달의민족 매출대금,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매출대금, 네이버페이 가맹점 정산대금 (단, 우리은행에서 정하지 않은 일부 온라인 결제대금 또는 가맹본부로부터 정산받은 매출대금은 "가맹점 매출대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주3) 노란우산 계약 해지, 월부금 연체 시 해당되지 않음 주4) 아파트관리비, 지로/펌뱅킹/CMS 자동납부 시 해당되며, 계좌간 자동이체는 해당되지 않음 주5) 거래중지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예금 해지 시 우대금리는 예금 해지일이 1~9일인 경우 전전월말 기준, 10일~ 말일인 경우 전월말 기준 우대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난 원가일로부터 예금 해지일 전일까지 적용				
수수료 면제	• 이 예금에서 발생한 거래에 한해서 아래의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① 우리은행 전자금융(인터넷/스마트/텔레뱅킹)을 통한 타행 이체수수료 ② 우리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영업시간 외 현금출금수수료 ③ 우리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 이체수수료				
예금자보호	해당 이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보호됩니다.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mark>불가</mark>				

	(축) 우리은행
구 분	내 용
원금 및 이자 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적용세율	• 정상일반세율은 이자소득의 15.4% 적용(이자소득세(14.0%) +지방소득세(1.4%)) ※ 적용세율은 2025.05.27. 현재의 세율이며,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거래중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의 거래 제한 (1) 예금잔액이 10,000원미만이며, 1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2) 예금잔액이 10,000원이상 50,000원미만이며, 2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3) 예금잔액이 50,000원이상 100,000원미만이며, 3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거래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한 후 가능
상속・양도 및 공동명의	• 상속, 양도 및 공동명의 <mark>불가</mark>
담보 제공	• 질권설정 및 담보 제공 <mark>불가</mark>
위법계약 해지권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주1)}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단,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계약이 종료하기 전일 것)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그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거나 또는 거절사유와 함께 거절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은행은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위약금 등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1)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8조 제2항),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제19조 제1항,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21조)

구 분	내 용
자료열람 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 및 출연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3 유의 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써,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이 상품은 우리은행 기업금융솔루션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1588-5000, 평일 09:00~18:00), 우리은행 홈페이지 (www.wooribank.com)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 (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록〉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어	설명		
압류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압류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질권설정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출연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